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2. 10 선고 2023가합1022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정 담당변호사 조상원, 박혜숙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윤

변론 종결2024. 10. 29.

판결 선고2024. 12. 1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양도양수대상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3. 2.경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2023. 7. 6. 체결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7. 6. 접수 제61454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이전계약을 각 179,033,4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가. 제1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이 179,033,4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이전계약 일부 취소를 원인으로 한 양도액 179,033,424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양도양수대상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3. 2.경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D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다. 피고와 C 사이에 2023. 7. 6. 체결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7. 6. 접수 제61454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이전계약을 취소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7. 6. 접수 제61454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안의 배경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E, F 주식회사가 공유하고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갑9,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5. 14. 접수 제49569호로 채권최고액 금 18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C은 2023. 2.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1 양도양수대상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양도·양수계약(을3-1,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23. 7. 6. 같은 일자 확정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7. 6. 접수 제61454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3. 7. 6. C의 적극재산(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제외)은 아래와 같다.

1	G은행	297,320	- 2024. 3. 5.자 금융거래회신- 2024. 3. 6.자 금융거래회신
2	H은행	1,065,167	-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잔액은 음수(소극재산)이나, 이를 포함하여 H은행 계좌의 잔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적극재산으로 기재함
합계	1,362,487		

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0225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반환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C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2024. 7. 17.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6.부터 2024.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갑12, 을8)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C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4. 8. 3. 확정되었다(을9).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무효 여부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C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할 무렵에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C은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할 의사 없이, 원고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양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채무자를 C으로, 제3채무자를 D, E, F을 주식회사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하는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결정(갑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카단11368,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23. 7. 28. D에 송달되었다(갑11).

그런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3-1)은 위 가압류결정이 있기 전인 2023. 2. 초순경 체결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이전등기는 D에게 위 가압류결정이 송달되기 이전인 2023. 7. 6. 마쳐졌다. 또한, C은 2021. 5. 14. 피고로부터 18억 원을 차용(을1)한 상태였으므로, C이 피고에게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C과 피고가 원고의 가압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으로 인한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채권양수인인 피고가 하였으므로, 채권양도통지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통지는 D에 도달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D에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기 전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게 되는 것일 뿐,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일에 채권이 성립하고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등 참조), 위 손해배상채권은 늦어도 C이 원고로부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최종 수령한 2017. 2. 9.경에는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일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2023. 2. 초)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계약(2023. 7. 6.)의 체결일보다 앞서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1,362,487원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2023. 2.경에도 C의 적극재산을 위와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2023. 2.경 C의 적극재산도 1,362,487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C의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1억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있었으므로,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18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D에 대한 별지1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959 판결 등

참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취소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계약 전부를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에서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액은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12. 1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9,033,424원 $\{= 1\text{억 } 6,000\text{만 원} \times (518\text{일}/365\text{일} \times 0.05 + 146\text{일}/365\text{일} \times 0.12)\}$, 원 미만 버림}의 합계액인 179,033,424원 $(= 1\text{억 } 6,000\text{만 원} + 19,033,424\text{원})$ 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계약은 179,033,4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 방법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로 하여금 재차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이를 그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1186, 2011다71193(병합) 판결 등 참조), 취소의 통지 외에 별도의 채권양도의 의사표시까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말소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계약과 같이 원인 행위가 일부만 취소된 경우에는 말소등기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계약의 일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로 하여금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계약의 일부 취소를 원인으로 한 양도액(= 취소 금액) 179,033,424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한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179,033,424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계약의 일부 취소를 원인으로 한 양도액 179,033,424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아람

판사이영곤

판사이두현

별지